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10543

발의연월일: 2025. 5. 19.

발 의 자 : 민형배ㆍ이개호ㆍ정동영

김동아 • 박지원 • 김용민

양문석 • 이성윤 • 소병훈

김성환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신용보증기금이 '지역균형개발 및 국민경제의 균형적 발전'을 보다 적극적으로 수행하도록 법 조항에 이를 명시하고자 합니다.

신용보증기금은 담보능력이 부족한 중소기업 등에 신용보증과 보증 연계투자 등을 제공해 자금 융통을 원활히 하고, 신용정보의 효율적 관리·운용을 통해 건전한 신용질서 확립을 목적으로 설립된 정책금 융기관입니다.

지금까지 지역간 불균형 해소와 전국 단위의 균형 발전을 위해 정부가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인구 분포, 경제력 집중, 생활서비스 접근 등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격차는 갈수록 벌어지고 있습니다.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정책금융기관이 보다 능동적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커지는 실정입니다.

이에, 신용보증기금이 '지역균형개발 및 국민경제의 균형적 발전'을

보다 적극적으로 수행하도록 관련 내용을 법 조항에 명시하고자 합니다. 이는 정책금융기관으로서의 공적 기능을 강화하고, 국가균형발전핵심 주체로서 그 책무를 명확히 하려는 것입니다(안 제1조).

법률 제 호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 제19866호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지역균형개발 및 국민경제의 균형적 발전"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법률 제19866호 신용보증기금법	법률 제19866호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	일부개정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신용보증기	제1조(목적)		
금을 설립하여 담보능력이 미			
약한 기업의 채무보증과 회사			
채등 유동화를 수행하게 하여			
기업의 자금융통을 원활히 하			
고, 신용정보의 효율적인 관리			
• 운용을 통하여 건전한 신용			
질서를 확립함으로써 <u>균형 있</u>	<u>지역균형</u>		
는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	개발 및 국민경제의 균형적 발		
함을 목적으로 한다.	<u>전</u>		